

특송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규정 변경 안내



2017 년 6 월 28 일

고객님께,

항상 DHL 서비스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,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
2017 년 7 월 1 일부로 특송 물품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일부 특송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. 이에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● **대상:** 목록통관으로 수입통관되는 특송 물품(상업서류 포함)

● **변경 내용:**

목록 배제 기준에 있어 '수취인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'가 배제대상에 추가되어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. [특송 물품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첨 1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10]

이는 상업서류를 포함한 모든 목록통관대상인 수입 화물에 적용되며, 수취인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신속한 목록통관이 불가하며,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이에 따라 1 일 이상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*목록통관은 미화 150 불 이하 (미국 수입품은 미화 200 불 이하) 물품에 대해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. 단, 목록통관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

*목록 배제란 의약품 등 목록통관으로 통관될 수 없는 물품들에 대해 목록통관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● **요청사항:**

고객님께서 수입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송자와 협조하시어 정확한 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당사는 고객님의 물품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, 고객님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(주) 디 에이치 엘 코리아
대표이사 한 병

